

서울고등법원 2024. 7. 4 선고 2023나20314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7. 4 선고 2023나20314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1가합57865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흥준

2. C

변론종결 2024. 6. 13.

판결선고 2024. 7. 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1가합578650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서울 강남구 D 전 2,525㎡ 중 992.4/2,52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E 사이에 2020. 9.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는 E에게 2020.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684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C와 E 사이에 2020. 10.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E에게 2020.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779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맨 밑에서 3행의 “갑 제5, 6, 8, 10, 13, 15호증” 부분을 “갑 제5, 6, 8, 10,

13, 15, 20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표2: 소극재산 내역]’ 중 제11항 ‘서대문세무서’의 채무액 “9,765,030원”을 “8,546,820원”으로, 합계액 “9,553,499,920원”을 “9,552,281,710원”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의 나.1)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피고들은, E가 F과 관련된 주식, 금융자산(은행예금, 보험, 채권, 국민연금 기타) 등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에게 앞서 본 각 부동산 외에 채권, 주식 등 다른 자산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해야 하는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설령 당시 E에게 채권 등 일부 금융자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극재산에 포함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 C은 항소심 변론종결 후 2024. 6. 17.자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F의 가족원단 재고자산 역시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 C이 위 참고서면에 첨부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설정계약일 무렵 E가 피고 C 주장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그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의 나.2)자)항 및 나.2)차)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자) 순번 1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서대문세무서는 2021. 6. 21.

제2경매절차에서 당해세(2021년 5월분 종합부동산세)로 8,546,820원을 신고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위 당해세 8,546,820원의 지급채무 역시 이 사건 설정계약일 무렵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한다(한편 서대문세무서는 2021. 8. 23. 제5경매절차에서도 당해세로 종합부동산세 8,680,72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는 제2경매절차에서 신고한 당해세와 동일한 2021년 5월분 종합부동산세이며 단지 가산금 등이 증액되어 신고액이 변동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설정계약일 무렵에 가까운 위 제2경매절차에서의 신고액인 8,546,820원을 소극재산의 가액으로 인정한다).

차) 따라서 이 사건 설정계약일 무렵 E의 소극재산 가액은 적어도 위 가)항 내지 자)항의 각 금액 합계 9,552,281,710원이다[한편 피고들은, E의 채무 중 이 사건 제1 내지 6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실제 채무액이 아니라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인 7,646,500,000원의 범위에서만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의 액수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므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무 역시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8행의 “9,553,499,920원”을 “9,552,281,710원”으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제1심은 적극재산 중 일부인 제1 내지 3부동산의 가액과 관련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결과에 따라 제1부동산의 가액을 5,249,796,000원으로, 제2, 3부동산의 가액을 3,294,263,850원으로 각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제1부동산의 가액이 6,492,021,280원으로 평가된 바 있고, 제2, 3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경매절차에서 3,707,000,000원에 최종 매각되었으므로, 제1부동산의 가액은 6,492,021,280원이고, 제2, 3부동산의 가액은 3,707,000,000원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E의 적극재산 가액은 소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며 E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먼저 제1부동산에 관하여 보면,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2023. 5.경 제1부동산의 가액이 6,492,021,280원으로 감정평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부동산의 가액은 기존의 5,249,796,000원에서 6,492,021,280원으로 상승하였다고 보이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을 기준으로 채무자 E의 무자력 여부를 다시 판단함에 있어 제1부동산의 가액은 6,492,021,28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이 사건 제2, 3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3,707,000,000원에 최종 매각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가액은 입찰자들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는 것이므로 매각가액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액이라 볼 수 없으며 위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제2, 3부동산의 가액을 3,294,263,85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E의 적극재산 가액은 1,242,225,280원(= 6,492,021,280원 - 5,249,796,000원) 증액되어 적극재산 합계액은 8,949,004,130원(= 7,706,778,850원 + 1,242,225,280원)이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극재산은 합계 9,552,281,710원에 이르므로, E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여전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설정계약일 이후 적극재산에 포함되었던 부동산 일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되었으나 이처럼 매각 또는 매도된 부동산의 가액만큼 소극재산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거나 매매대금 상당액의 현금이 적극재산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처럼 일부 적극재산이 매각 또는 매도된 사정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4) 따라서 E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자력을 회복하여 무자력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봉원, 판사 최승원, 판사 김태호